

:: 신청안내

☑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 2024년 5월 7일(화) ~ 6월 21일(금) 23:59까지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나요?

- ◆ 구비서류 접수, 본인서명 날인 등의 사유로 전화 신청·접수 불가
-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 접수처 사정에 따라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서류 및 제출방법을 해당 접수처에 문의 후 신청토록 유도

☑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 공통사항(필수)
 -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지침 별지 제6호 서식]
 -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등으로 구성
- ◆ 선택사항
 - ①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각 1부
 - ②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③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만19세 미만인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 위임장 1부(대리인이 신청 시, 별지 제14호 서식)
 - ※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 증명서류를 첨부

☑ 신청·보급절차는?



☑ 신청서 접수와 문의처?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지역	연락처
서울	02-3470-1551	울산	052-229-2345	전북	063-280-2598
부산	051-888-2371	세종	044-300-2418	전남	061-286-2725
대구	053-803-3613	경기	031-8008-2913	경북	054-880-2977
인천	032-440-2324	강원	033-249-2151	경남	055-211-2617
광주	062-613-2615	충북	043-220-2653	제주	064-710-2343
대전	042-270-3214	충남	041-635-3711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인천, 대전,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11개 지역은 기초 시·군·구에서 신청서 접수

::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역순회 체험전시회

- ◆ 전시일자 : 2024년 5월 9일(목) ~ 6월 21일(금)
- ◆ 운영시간 : 10시 ~ 17시(각 지역 전시 마지막날은 16시) ※ 일부 지역은 사정에 의해 단축조정될 수 있음
- ◆ 전시지역 : 전국 11개 지역
- ◆ 내 용 :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전시·체험 및 상담 ※ 행사전시업체 사정에 따라 전시 품목은 변경될 수 있음
- ◆ 지역별 체험전시회 현황



:: 전시 일정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일	2일	3일	4일
5월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6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 전화
 1588-2670

2024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및 제품 안내

정보통신보조기기가 여러분의
 풍요롭고 스마트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방자치단체

:: 보급개요

☑ 누구에게 보급되나요?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보급기기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43종
 - ※ 보급 대상기기 세부내역은 제품 설명서 참조

☑ 어떻게 지원되나요?

-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20%는 개인부담)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 선정·평가기준

☑ 어떤방법으로 선정되나요?

- ◆ 보급대상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서,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하는 경우), 평가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 동 보급사업, 또는 정부기관등으로 부터 지급받은 내역을 고려하여 기존에 보급받은 경우에는 후순위로 지원 또는 제외될 수 있음

☑ 선정 절차는?



☑ 보급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 수혜이력 등에 따라 우선순위 대상자를 보조기기별로 1순위, 2순위로 분류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보급받은 이력(수혜횟수)이 적은 자, 평가결과 고득점인자 등 순으로 보급대상자 순위 결정
 - 1 순 위 : 신규자(수혜이력이 없는 자), 내구연한 경과자
 - 2 순 위 : 내구연한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다른 경우
 - 보급제외 : 내구연한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같은 경우
- ※ 보급제외 : 재 보급기간 미 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다른 경우
- ※ 제품별로 1순위 우선 선정 후 여건을 고려하여 2순위 내에서 추가 선정

◆ 동일 순위내 평가항목

장애 등급	경제적 여건	사회활동 참여도	보급 횟수	활용도
보급품목별 적정등급 장애인 우선	저소득층 우선	규칙자)학생)일반/취업자	신규 신청 장애인 우선	활용도가 높은 장애인 우선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
 ※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9조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